

웨슬리신학연구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및 위치) 본 연구소는 웨슬리신학연구소(Institute for Wesleyan Theology)"라 칭하고 서울신학대학교 안에 둔다.

제2조 (목적)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의 가장 중요한 전통인 웨슬리 신학을 발전시켜 서울신학대학교의 교육이념의 근거를 제시하고 새로운 세대와 세계선교를 위한 신학적 기반작업을 충실하게 하여 웨슬리 신학의 세계적인 중심지로 서울신학대학교가 부각하도록 노력할 뿐 아니라 성결의 신학을 강조하여 이 땅위에 정의와 평화를 위한 새로운 기반을 조성하는데 진력한다.

제3조 (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① 한국교회의 목회와 선교, 기독교신학에서 웨슬리 신학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한다.
 1. 본 연구소에서 발표된 연구와 국내외 미 발표된 논문들 중 웨슬리 신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발굴하여 출판하고 연구서를 발행.
 2. 웨슬리 신학이 국내에서 더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의 주요 저서를 번역 출판함.
 3. 신학생과 목회자를 상대로 자유토론, 정기적 세미나, 북-카페 등을 신설하여 적극적인 홍보.
 4. 분기별 1회 전문적인 학술세미나를 개최.
 5. 신학 대학(원)의 기획사업으로 웨슬리 신학총서 발간
 6. 웨슬리의 성서 연구를 기반으로 한 주석집 발간 및 번역작업
- ② 한국교회의 전반의 다양한 상황을 접목하기 위해서 다양한 학술지 및 학회등과 교류강화
- ③ 웨슬리 신학의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반 학문과의 교류 연구
- ④ 다양한 목회자 섬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목회자를 위한 공헌
- ⑤ 외국의 우수한 학자 및 웨슬리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확립
- ⑥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며 취지에 부합되는 제반 사업

제 2 장 기구

제4조 (임직원) 본 연구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① 소장 1인
- ② 운영위원 약간 명
- ③ 전임연구원 및 연구원 약간 명
- ④ 간사(조교) 1인
- ⑤ 행정 간사(부)약간 명

제5조 (자격 및 임명) ① 본 연구소의 소장은 전임교원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운영위원은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④ 간사와 조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임명한다.

⑤ 간사와 조교는 본교 조교인사규정을 따른다.

④ 행정간사(부)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제6조 (임기) 본 연구소의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7조 (직무) ①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와 활동을 관장한다.

② 연구원은 주어진 연구를 수행한다.

③ 간사와 조교는 소장의 지도하에 연구실의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

④ 후원회의 이사와 자문위원, 그리고 고문 등은 연구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토론에 함께 토의할 수 있으며 주로 홍보와 연구소의 대외활동과 관련하여 소장을 책임적으로 보좌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및 연구위원회

제8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본 연구소는 연구소의 운영계획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장이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인원은 소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연구소의 소장이 된다.

제9조 (임명) 운영위원은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 운영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11조 (연구위원회) ① 웨슬리 신학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출판을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두며 연구위원은 편집위원을 겸한다.

② 연구위원은 교수와 교계 인사 중에서 8명-12명 이내로 하며, 운영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연구위원회 위원장은 본 연구소의 소장이 된다.

④ 편집위원은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학술지를 책임지고 편집과 출판을 담당한다.

제4장 후원회와 고문단

제12조 (후원회의 설치) ① 본 연구소는 연구소의 운영계획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 후원회를 설치한다.

② 후원회의 위원장은 후원회원 중에서 후원회가 선출하고 소장이 동의 임명한다.

③ 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후원회장과 소장이 소집한다.

④ 후원회의 인원은 후원회장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구성한다.

제13조 (고문단의 설치) ① 본 연구소는 연구소의 운영계획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고문단을 설치한다.

② 고문단은 대표고문과 고문으로 구성한다.

제 5 장 회 원

제14조 (자격) 본 연구소의 회원은 기독교신학분야에서 석사이상 또는 목사, 선교사(준회원) 그리고 박사이상(정회원)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본 연구소의 목적에 공감하고, 회칙을 준수하며 본 연구소의 결속과 발전을 위하여 모든 집회와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 협력하기를 원하는 자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15조 (권리) 본 연구소의 회원은 연구소활동에 참여할 권리, 연구소에서 발행되는 학술지의 투고와 학술지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16조 (회원의 종류) 본 연구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교회, 선교단체 등)으로 하며,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개인회원[년 15,000원], 단체회원[년 50,000원])

제17조 (회원의 제명)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회원의 제명통고가 본 연구소에 도착한 날을 제명일로 한다.

1. 본 연구소의 명예를 중대하게 손상시킨 회원
2. 본 연구소의 정해진 연회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
3. 서면 상으로 탈퇴의사를 표명한 회원

제 6 장 재 정

제18조 (재원) 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서울신학대학교 연구 지원비
2. 외부의 연구 지원비
3. 회비
4. 연구기금
5. 기타

제19조 (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20조 (승인) 매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결의를 거쳐 집행하며, 소장은 이를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 칙

- ① (규약의 개정)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 ② (기타사항)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신학대학교 부설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 ③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연구소의 활동은 본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④ (시행) 이 규정은 2014년 09월 30일부터 시행한다.